

감정문화연구소 규정

시행: 2022. 12. 01.

제1조(명칭)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부설 감정문화연구소(Center for Affect and Culture Studies, 이하 “본 연구소”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연구소는 감정을 인문학의 새로운 연구 주제로 확립하고 감정이 정치, 사회, 문화, 기술 전반에 걸쳐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감정과 문학/문화, 심리학, 사회학, 커뮤니케이션, 기술 등 감정이 현대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 연구
2. 국내·외 주요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
3. 정기 세미나, 워크숍 및 테마별 심포지움 개최를 통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성과 도출
4. 교내 및 교외 학부 및 대학원에 본 연구소의 성과물을 공유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강좌 개설
5. 해외 연구자 초청 및 공동연구를 통한 국제협력
6. 연구서, 대중서,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등의 발간을 통해 감정 관련 협회 연구소로서의 기능
7.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시행

제4조(소재지)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내에 둔다.

제5조(조직) ① 본 연구소에는 소장 1인과 분야별로 부장을 두며,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소장은 소관위원회의 심의와 소속 대학(원)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하며, 본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.

③ 연구지원부장, 학술연구부장 및 대외협력부장은 교내·외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, 해당 분야의 연구 및 행정 활동을 총괄한다.

④ 본 연구소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지원부, 학술연구부, 대외협력부를 두며, 필요한 경우에 특수사업부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연구지원부 : 연구소의 행정관리, 기획, 학술, 재정, 시설 및 공통 기자재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
2. 학술연구부 : 연구과제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업무
3. 대외협력부 : 연구소의 대외협력 등에 관한 업무

제6조(연구원의 자격) 본 연구소 연구원의 자격 등은 「부설연구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7조(조직 및 운영)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본 연구소에는 소장, 총무이사, 연구지원부장, 학술연구부장, 대외협력부장 및 소수의 연구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본 연구소의 소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
③ 소장은 연구원들의 추천을 받은 소수의 연구원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주요사업 및 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
1. 본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2. 본 연구소의 조직, 운영체계 및 사업계획 수립
3. 본 연구소의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과제 선정
4. 연구원 등의 인사 추천
5. 본 연구소의 주요 사업 운영 및 진행에 대한 평가,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및 감사

제9조(재원) 본 연구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한국연구재단 등 국공립 기관의 용역 사업비
2. 본교의 연구소 지원비

3. 보조금 및 기부금
4. 기금 및 기타 수익금

제10조(회계) ① 본 연구소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.
②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11조(보칙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9년 6월 28일부로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